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10. 24.(수) / 총 6매(본문3)
담당 부서 철도안전정책과	담 당 자	•과장 김인, 사무관 이형주 •☎ (044) 201-4600, 4603
보 도 일 시	2018년 10월 2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4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 ·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

행정처분심의위서 광운대역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 물어

□ **철도안전법** 규정을 준수해야 할 **인천공항공사**와 **한국철도공사**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·과태료 312.5만 원을 부과하였고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하였다.

□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·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(‘17.7.18. ’ 18.1.31.)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하였다.

○ 「철도안전법」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,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(또는 신고)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.

-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하였고,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.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.

□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*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.

* 한국철도공사의 경원선 광운대역 구내 입환(주요 역이나 조차장 등지에서 철도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) 업무담당자가 함께 입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('17.5.27.)

○ 먼저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다.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'역무 매뉴얼'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,

-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.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'역무 매뉴얼'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.

○ 둘째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다.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·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(제23조)를 부여하고 있다.

-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였고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-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”면서,

- “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이형주 사무관(☎ 044-201-460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**철도안전법 처분 기준표(인천국제공항공사)**

<철도안전법 제9조>

제9조(승인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 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
2.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

<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> 안전관리체계 처분기준

위반행위	근거 조문	처 분 기 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
2)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	법 제9조 제1항 제2호	업무정지 (업무제한) 1개월	업무정지 (업무제한) 2개월	업무정지 (업무제한) 4개월	업무정지 (업무제한) 6개월
3)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	법 제9조 제1항 제2호	경고	업무정지 (업무제한) 1개월	업무정지 (업무제한) 2개월	업무정지 (업무제한) 4개월

<철도안전법 제9조의2>

제9조의2(과징금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<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>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

위반행위	근거 조문	과징금 금액(단위: 백만원)			
		업무정지 (업무제한) 1개월	업무정지 (업무제한) 2개월	업무정지 (업무제한) 4개월	업무정지 (업무제한) 6개월
1)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	법 제9조 제1항 제2호	5	15	30	50
2)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	법 제9조 제1항 제2호	5	15	30	-

<철도안전법 제81조>

제8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7조제3항(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

1. 제7조제3항(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

<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6> 과태료 부과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3항(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	법 제81조 제1항 제1호	125	250	500
나. 법 제7조제3항(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	법 제81조 제2항 제1호	62.5	125	250

붙임2 **철도안전법 처분 기준표(한국철도공사)**

<철도안전법 제9조>

제9조(승인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 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
3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
<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> 안전관리체계 처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
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)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가) 1명 이상 3명 미만	법 제9조 제1항 제3호	업무정지(업무제한) 1개월

<철도안전법 제9조의2>

제9조의2(과징금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<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>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
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)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가) 1명 이상 3명 미만	법 제9조 제1항 제3호	2억원